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한·중, 한·중·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(5급 2명)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1명(7급 1명) 및 종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한 19명(5급)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5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(행정주사보 1명)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

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8명, 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시설
사무관·농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공업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기록
연구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
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9명으로 본다.

[별표 5]

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25조 관련)

1. 제2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12월 31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행정사무관	2

2. 제2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1년 2월 28일)

총계	3
일반직 계	3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
3. 제2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1년 2월 28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한시정원) ① 한 · 중, 한 · 중 · 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.	제25조(한시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2022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.
② 삭 제	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기획재정부령 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기획재정부령 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(행정주사보 1명)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	<u><삭 제></u>
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8명, 행정사무관 ·	<u><삭 제></u>

전산사무관·시설사무관·농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공업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9명으로 본다.	
---	--